"문화전당 전 전시예술감독 해고 무효"

광주 고법 "고용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박근혜 정부 부당해고 주장은 판단 배제

아시아문화개발원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 전시예술감독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는 무효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진보적 문화예술인 배제 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동조하는 내·외부 세력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을 해고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에서 배제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박병칠)는 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예술감독 이모 씨가 아시아문화원(아시아문화개발원 소송수계인·이하 문화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문화원이 2015년 1월9일 내린 이 씨에 대한 계약해지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문화원은 이 씨에게 1억1712만여 원(임금 성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씨는 2011년 12월27일부터 문화원의 초대 원장으로 재직하다 2013년 5월21일 원장직에서 사임했다. 이후 2013년 6월1일 문화원과 전시예술감독 계약을 체결했다.

이 씨는 계약에 따라 문화원의 전시예술감독으로서 문화창조원·어린이문화원·아시아문화정보원 관련 업무를 전부 담당하다 2013년 12월23일께부터는 직제개편과 함께 문화창조원 업무만 담당했다.

이후 2015년 1월9일 문화원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해지 사유는 계약서에 규정된 주요 업무 추진 일정 지체, 외부 평가 결과 창조원 계획 및 콘텐츠 구체성 결여로 인한 개관일정 차질 판정 등이었다.

이 씨는 '해당 계약은 고용계약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다. 해지통보는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에 위반됐을 뿐만 아니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해지통보는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해 무효이다. 부당해고 기간 임금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진보적 문화예술인 배제 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김종덕 문체부 장관과 내·외부 동조 세력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을 해고한 만큼 이 점에서도 해고 통지가 실체적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문화원 측은 '해당 계약은 도급계약 내지 위임계약이다. 이 씨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다. 해지통보는 적법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증언들을 종합해 볼 때 이 계약의 실질은 고용계약으로 이 씨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는 문화원 원장으로부터 사무국장과 동일한 1급 직원으로 채용돼 전시예술감독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만큼 이 씨도 문화원 직원으로서 취업규칙과 복무지침의 적용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직제 규정 및 계약에 따라 문화원의 정원에 포함돼 원장으로부터 구체적 업무를 분장받았다. 이 씨의 전체적 업무수행 과정에는 문화원 측이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했다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상근직 직원으로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다. 최종 고용계약은 문화원 원장이 체결하고 문화원의 비용으로 임금이 지급된 만큼 이 씨가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지 통보의 절차적 위법과 관련, 재판부는 이 계약의 실질은 고용계약이며 이 씨에게는 근로기준법과 문화원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원은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 씨에 대한 해고통지를 했어야 할 것인데 인사위원회의 심의 등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해지통보를 한 만큼 이는 절차적으로 위법해 무효이다. 해고 사유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진보적 문화예술인 배제정책의 일환으로 해고가 이뤄졌다'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현재까지는 의혹 내지 추측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해 12월22일 이 씨의 주장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 조사개시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해지통보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문화원에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봐 해지통보가 무효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주춘정 기자

개성있는 강아지 에코백 만들기 무술년을 맞아 '황금강아지 에코백' 만들기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농업박물관에서 직접 만든 가방을 선보이고 있다.

'사흘째 많은 눈 광주' 교통사고 140건…경찰 비상근무

광주와 전남지역에 사흘째 많은 눈이 내림에 따라 광주경찰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총 14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교통경찰과 기동대 등을 동원해 비상근무를 하고있다고 11일 밝혔다.

교통사고는 눈이내리기 시작한 8일부터 10일까지 3일동안 총 140건이 발생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8일에 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9일 42건, 10일 47건이다. 평일 기준 하루평균 교통사고 발생률은 42.2건이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청은 교통경찰과 기동대 등 400여명과 순찰차량 89대, 제설차량 34대를 동원해 차량소통과 교통안전 위주의 비상근무를 실시했다.

특히 오르막 구간인 지산시계탑과 제4수원지, 산장입구 등 무등산길 주변에 교통경찰관을 집중 배치해 차량을 통제했다.

결빙구간은 순찰차량을 거점 배치해 서행을 유도했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회 조치 등 2차사고 예방에 주력했다.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결빙 등 취약구간 순찰을 강화했고 결빙구간인 무진대로와 빛고을대로, 상무대로 등의 제설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가 결빙됐을 경우 차량 운행속도를 평소 속도보다 감속해야 한다"며 "서행운전과 차간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겨울철에는 차량용 월동장구를 비치해 눈길에 대비해야 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다"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진도서 돈사 불…돼지 1만여마리 소사

진도군 한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1만여마리가 죽었다.

11일 오전 2시51분께 진도군 고금면 한 돈사에서 불이 나 119에 의해 2시간50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돈사 5개동 중 1개동(8518㎡·2층 규모)이 모두 탔다. 돈사 안에 있던 어미돼지 220마리, 새끼돼지 5000여마리 등 돼지 1만27마리가 죽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진화 작업에는 소방관 30여명과 소방차 11대가 투입됐다.

소방당국은 "새끼 분만 작업 중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돈 없어요' 택시 요금 지불하지 않은 20대

광주 서부경찰서는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송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30분부터 이날 오전 2시30분까지 이모(57)씨가 운전한 택시를 타고 충남 당진에서 출발해 목포를 거쳐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도착, 택시 요금 48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송씨는 대설주의보가 내린 상황에서 무작정 택시를 타고 광주까지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날부터 광주와 목포·장성·화순·영암·신안·나주·영광·함평·무안 등 전남 9개 시·군에는 대설경보가 발효 중이다.

여수·순천·광양·고흥·곡성·구례를 제외한 전남 7개 군(장흥·진도·완도·해남·강진·보성·담양)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적설량은 나주 25.5㎝, 영광 24㎝, 함평 22.5㎝, 목포 20.7㎝, 무안 20.6㎝, 광주·신안 19.1㎝, 영암 18.1㎝, 장성 16.6㎝, 화순·강진 15㎝, 장흥 13㎝, 곡성 12.9㎝ 등을 기록하고 있다.

태어난 날 죽은 아기 버린 20대 엄마 구속

서울 금천경찰서는 태어난 당일 죽은 영아를 집 밖에 버린 A(23·여)씨를 영아유기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혼자 살던 금천구 독산동 원룸에서 아이를 낳은 후 4시간 동안 안고 있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아이가 죽자 두려운 나머지 출산 당일 오후 4시께 아이를 동네 주택가 골목에 내다 버렸다.

아이는 버려진 지 6일 만인 지난해 12월29일 두 번째 목격자였던 지나가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최초 목격자는 인근 골목에 움푹 파인 배수로에서 아기를 발견했지만, 쓰레기로 착각해 쓰레기 더미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아이를 발견했을 당시 영아는 탯줄이 달린 채로 수건에 쌓여 있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의뢰했지만 영아라 사인을 밝히기 어렵다는 소견을 들었다. 다만 태어났을 당시에는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아빠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공항 항공기 회항 2천명 발묶여

제주국제공항에 11일 많은 눈이 쌓이면서 활주로가 임시 폐쇄되고 항공기 이용객 2000여명의 발이 묶였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도 전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국제공항에도 많은 눈이 내려 제설작업을 위해 오전 8시33분께 활주로를 폐쇄했다.

제주공항에는 기상악화 및 제설작업에 따라 항공편의 지연·결항이 속출하고 있어 이용객들이 몇 시간째 터미널에서 대기하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오전 10시 기준 항공기 운항 지연 29편, 결항 38편이며, 오전 8시35분 청주를 출발해 제주를 향하던 진에어 551편을 시작으로 총 12편이 회항했다.

뉴시스